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시설물 관리분야 특정감사(☆☆) —

2025. 11.

처분요구일람표

1.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주의)	1
2.	★★★★ ◇◇◇◇◇ 앞 ♪ ♪ 시설 관리 부적정 (시정)	3
3.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미이행 (시정)	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른 실시시기¹⁾와 점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이행할 경우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관리대상시설물 중 제2종 시설인 도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2025. 10. 6.까지 시설물의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도래일에서 30일 이내로(2025. 11. 5.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 붙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소관 시설물의 점검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점검기한이 지났음에도 점검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이 기한내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 2025년 ☆☆시 안전점검 부적정 현황

관리주체	시설물명	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안전 등급	점검종류	점검 기한	비고
☆☆시 ♀♀과	※※교	2종	교량	도로교량	B	정밀 안전점검	10.6.	10.29. 용역발주
☆☆시 ♀♀과	※※교	2종	교량	도로교량	B	정밀 안전점검	10.6	10.29. 용역발주

※ 자료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설물관리현황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에게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앞 ♪♪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시설물 하자관리업무 부적정

☆☆시 ♣♣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 앞 ♪♪시설 공사」를 (주)▽▽▽▽과 2023. 10. 24. 계약하고 2024. 4. 15.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 ◇◇◇◇◇ 앞 ♪♪시설공사	◇◇◇◇◇ (막구조) 1,336.68㎡	♣♣과 (2022.10.~ 2024.04.)	23.09.15.	23.10.26. (24.04.15.)	20	1,695	(주)▽▽▽▽ (◆건축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임회해야 하고 임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

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는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2024. 4. 15. 준공된 ★★★★★ ◇◇◇◇◇ 앞 ♪♪시설을 관리하면서, ㉠㉡과의 2024년도 하반기, 2025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공문으로 하자검사를 위임받아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조물 녹 발생 등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결과 ‘양호’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하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하자검사를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구조물 도막 들뜸, 도막 박리, 녹발생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자보수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아 하자보수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 검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하자보수기간	정기검사현황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여부	최종검사현황
★★★★ ◇◇◇◇◇ 앞 ♪♪시설공사	2024.04.15.~ 2027.04.14.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하반기 실시 (검사결과 모두 '양호'로 제출)	부	미도래

[사진] ★★★★★ ◇◇◇◇◇ 앞 ♪♪시설 하자 현황

도막 들뜸	
도막 들뜸 및 박리, 녹발생	
도막 박리	녹발생
도막 박리 및 녹발생	

2. 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할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 ◇◇◇◇◇ 앞 ♪♪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을 요청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2024. 4. 15. ★★★★★ ◇◇◇◇◇ 앞 ♪♪시설공사를 준공한 후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2024. 6. 13.까지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025. 10. 30.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유재산임에도 준공 후 소유권보존을 위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자산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시 재산권 보호에 공백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하자 발생 부분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 및 권리 보전 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 ###에게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미이행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시 △△△△사업소(전 ▽▽▽사업소)에서는 △△△△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²⁾에 대하여 구분에 따른 시기³⁾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⁴⁾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용역 및 시공평가를 시행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2)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

4)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

5)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설계용역평가 결과표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그런데도 발주청인 ☆☆☆시 △△△△사업소에서는 “◆◆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미시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도 급 액)	사 업 기 간		평가기한	비 고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계	2건 (용역평가1, 시공평가1)						
1	◆◆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1,482	2020.09.15~ 2024.06.06	2019.10.23.~ 2024.06.05.	2024.08.04.	용역 평가 대상
2	◆◆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건설공사 1식	11,548	2020.09.15.~ 2024.06.06.	2019.10.23.~ 2024.06.05.	2024.08.04.	시공 평가 대상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 * *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